

IMO 제33차 복원성, 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소위원회 회의참석을 마치고

한 국 어 선 협 회
주임기술원 김 경 교

1. 회의개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약칭 IMO)의 제 33 차 복원성, 만재 흡수선 및 어선 안전소위원회가 '88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영국, 런던 IMO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에서는 그간 어선의 안전 및 어민의 권익과 국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하여 '82년도부터 매년 본 회의에 참가하여 왔으며 금번 회의의 아국 및 각국 참가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아국 대표단

수석대표 : 수산청

어선과장 정창세

수석대표 : 주영대사관

해무관 김종대

기술자문 : 한국어선협회

주임기술원 김경교

기술자문 :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문태일

기술자문 : 한국선급

런던사무소장 김태우

나. 각국 대표단

1) 회원국 (36개국, 119명)

아르헨티나(1), 오스트레일리아(1), 벨기에(3), 브라질(2), 캐나다(2), 칠레(1), 중국(4), 사이프러스(1), 덴마크(3), 에콰도르(1), 핀란드(2), 프랑스(3), 동독(1), 서독(4), 그리스(4), 인도(1), 이태리(2), 일본(10), 리베리아(7), 멕시코(4), 네델란드(3), 나이지리아(1), 노르웨이(10), 파키스탄(1), 페루(1), 파나마(3), 폴란드(3), 대한민국(5), 스페인(3), 스웨덴(3), 우르파이(1)

소련(6), 영국(15), 미국(5)
유고슬라비아(1), 이집트(1)

2) 준 회원국 (1개국, 1명)

홍콩(1)

3) 비정부기구 (6기구, 15명)

발틱 및 국제해사회의

(BIMCO, 1)

국제해운회의소(ICS, 2)

국제자유무역연합회

(ICFTU, 1)

국제선급연합회(IACS, 3)

국제시추업자연연합회

(IADC, 4)

국제선장연합회(IFSM, 2)

석유산업국제탐사 및 생산평의회(E & 9 FORUM, 2)

4) 사무국 : 5명

2. 회의일정 및 의제

일시	회 의 의 제
월 (4)	개 회 1. 회의의제 채택 2. 해사안전위원회 결정사항 3. 비손상시 복원성 (특별작업반) 5. Modu 코우드의 복원성 및 구획요건에 대한 검토 (특별작업반) 7. 여객선의 침수방지에 대한 재고 (특별작업반)

일시	회 의 의 제
화 (5)	8.2 Ro-Ro 선을 위시한 건화물선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 8.4 1977 년 토레몰리노스협약에 대한 의정서의 작성 8.3 Ro-Ro 여객철회선과 관련한 SOLAS 74의 개정
수 (6)	6. 갑판적 목재 운반선의 복원성에 관한 검토 8.1 생존의 확률적 개념에 기초한 길이 100 m 미만의 Ro-Ro 선을 위시한 건화물선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 8.5 IBC / IGC 코우드 제 2 장 생존능력 요건 8.6 1966 LL 협약의 기술규칙 검토
목 (7)	4. 어구조조에 따른 외력 10. 기타사항 11. 1989 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금 (8)	9. 작업계획 12. 해사안전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3. 어선분야 의제의 토의내용 및 결정사항

가. 1977년 어선안전 협약을 위한 의정서 개발

○ 토의내용

의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아국이 해사안전위원회(MSC)에 제출한 문서(MSC 55/6/9)를 기초로 각 장별 적용기준 및 각 규칙의 수정사항을 토의함.

○ 결정사항

제 4 장(기관, 전기설비 및 자동화 구역) 및 제 5 장(방화 화재탐지, 소화 및 소화작업)에 대한 최소 적용 길이를 현 24 m에서 45 m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하였고, 제 7 장(구명설비), 제 9 장(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및 제 10 장(선박용 항해장비)에 대한 최소적용 길이 기준을 현 24 m에서 45 m로 상향조정시키는 문제를 토의하

였으나, 견해 차이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각각 구명설비소위원회, 무선통신소위원회 및 항해안전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검토토록 하였다.

또한 제 3 장의 최소 선수높이는 현 기준이 너무 높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적용 높이가 기준은 차기 회의에서 검토키로 하고 의정서 초안의 작성목표 연도를 1989 년도에서 1990 년도로 연장할 것을 결정하고 4 항의 초안그룹에서의 검토사항을 승인하였다.

나. 어로장비에 의한 외력

○ 검토사항

중국(SLF 33/4, SLF 33/4/CORR.1 및 SLF 33/INF.26) 및 폴란드(SLF 33/INF.17)가 제출한 어로장비의 외력에 대한 기준을 검토

○ 결정사항

본 의제는 자료제출의 미비

와 회의 일정관계로 차기 회의에서 검토키로 결정하였으며, 회원국들에게 상기 제출서류에 대한 제안이나 지적사항을 차기 회의시까지 제출토록 결정함.

다. 비손상 복원성

○ 검토사항

길이 24 m 이상 45 m 미만 어선의 기상기준에 대하여 그리스(SLF 33/INF.21), 일본(SLF 33/INF.9), 폴란드(SLF 33/3/7) 및 소련(SLF 33/INF.3)에 의해서 제출된 기상기준의 적용 예를 검토하였음.

○ 결정사항

소련은 IMO 기상기준의 풍압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으며, 폴란드가 소련규칙으로 계산한 경사 모우멘트는 IMO 기준 보다 22% 낮음을 지적했다. 소련은 다음 회기까지 풍압 공식을 유도하여 제출키로 동의함.

4. 어선안전 협약에 관한 초안그룹 보고서 요약

1977 년 스페인의 토리몰리노스(Torrimolinos)에서 "어선안전협약"이 채택된 이후 11년 이 경과한 지금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어 협약내용중 일부 국가(한국, 일본, 중국, 소련 등)가 수락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정서를 채택하므로서 본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의정서 초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그룹이 편성되었다. 이 초

안 그룹에는 아국을 포함한 8 개국 15 명이 참석하였으며 토 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일반사항

제1장은 한국이 제안한 내용을 토의하였고, 규칙 6(검사)과 11(증서의 유효기간)을 SOLAS74와 일치시키도록 수정할 것을 토의하였다.

제2장 구조,수밀성 및 설비

일본(MSC 13/WP.8) 및 한국(MSC 55/6/9)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규칙 15(풍우 밀문) 및 17(목재 카바 이외의 카바에 의하여 폐쇄되는 hatchway)의 원문을 수정하기로 동의하였다.

제3장 복원성 및 이에 관련된 내항성

초안안은 규칙 38(선수높이)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 첨부서류 3의 "회의에 의한 권고 5"에 있는 선수높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1966년 만재홀수선 협정의 100m 이하의 선박에 대한 최소 선수높이 기준과 같이 적용토록한 한국의 제안을 검토하였다.

선수높이 적용 기준이 소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제4장 기관,전기설비 및 기관자동화 구역

제4장의 적용에 대해서 초안그룹은 적용길이 기준을 24m 이상에서 45m 이상으로 수

정할 것을 동의하였다.

제5장 방화, 화재탐지, 소화 및 소화작업

○ SLF 32/21에 언급된바와 같이, A부의 적용길이는 55m 이상에서 60m 이상으로 수정하고, B부의 적용길이는 55m 미만 적용에서 45m 이상 60m 미만 적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함.

○ 초안그룹의 시간부족으로 1977 토레몰리노스협약의 제5장 A부 및 B부를 1974 SOLAS 조약의 II-2장에 따라 IMO 사무국이 수정할 것을 동의함.

제6장 선원의 보호

SLF 32/21에서 전에 언급된바와 같이, 24m의 최소길이 기준과 기본내용을 변경없이 그대로 두기로 동의함.

제7장 구명설비

○ 초안그룹은 SLF 32/21에서 전에 언급된, 최소길이 기준을 24m에서 45m로 증가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논의하였다.

한국, 일본 및 중국은 규칙 110(서바이벌 크라프트 및 구조조정 수 및 형식)위에 아래 문장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관청이 항해의 성질 및 상태 또는 기상상태, 또는 선박의 크기와 조종 또는 기상경보 장치 및 탐색, 구조장비가 근접 이용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이장에서 언급된 요

구사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45m 미만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이장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 초안그룹은 다음 회기 토의 때 위의 제안을 기준으로 토의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중국, 일본, 한국 및 소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 한국(MSC 55/6/9), 일본(MSC 53/WP.8), 중국(SLF 33/8) 및 소련(SLF 33/INF.29)이 제출한 서류의 이장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구명설비 소위원회(SLR)에 검토의뢰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8장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

초안그룹은 한국(MSC 55/6/9)과 소련(SLF 33/INF.29)이 제출한 서류의 제안을 토의하였으며, 한국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9장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SLF 32/21에서 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최소 길이 기준을 45m로 증가시키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은 최소 길이 기준을 45m로 증가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24m로 원안대로 두기를 원하여 견해차이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그룹은 SLF 32/2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SLF 33/8) 및 소련(SLF 33/INF. 29)이 제출한 수정사항을 무선통신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동의하였다.

제10장 선박용 항해장비

SLF 32/21에서 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최소 길이 기준을 45 m로 증가시키는 문제가 논의 되었다.

초안그룹은 길이 한계와 SOLAS 74의 제 5장의 관련사항을 삽입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이것을 항해안전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결정하였다.

부 록 1 증 서

초안그룹은 이 부록의 증서와 증서의 양식이 수정된 1974 SOLAS 조약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 록 2 구명설비의 명세서

초안그룹은 이 부록이 수정된 1974 SOLAS 조약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구명설비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첨부서류 2 - 서바이벌 크라프트 및 구조정의 의장품표

SLF 32/21에서 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첨부서류는 그대로 두도록 하는 것과 수정된 1974 SOLAS 조약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동의하였다.

초안그룹은 또한 SLF 33/INF. 29를 고려하고 이것을 구명설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위임하였다.

첨부서류 3 회의에 의한 권고

초안그룹은 SLF 33/INF. 29(소련) 서류의 제안을 검토하였고, 이 문제를 무선통신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위임하였다.

SLF 32/21에서 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첨부서류는 그대로 두기로 동의하였고, 어떤 새로운 기상조건 또는 1977 토레몰리노스 협약의 개발이후에 기구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의정서 개발 목표일지

초안그룹은 SLF 33/2의 소위원회 작업순서 13·3절에 언급된 1989년의 완료 목표일자를 다른 소위원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990년도로 변경시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의정서의 언어

중국은 협약의 의정서 사용언어의 하나로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초안그룹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5. 아국 대표단 활동

아국대표단은 1977 토레몰리

노스 어선안전협약의 의정서 작성을 위한 초안그룹(Arafting Group)에 참가하여 현 협약을 수락하지 못하는 아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근해어선 및 소형원양어선에 수용하기 어려운 제 4 장(기관, 전기설비 및 기관자동화 구역) 제 5 장(방화, 화재탐지, 소화 및 소화작업), 제 7 장(구명설비), 제 9 장(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및 제 10 장(선박용 항해장비)의 적용 길이를 현 24 m에서 45 m로 상향조정기로 합의하고 제 7 장, 제 9 장 및 제 10 장은 견해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관계로 관련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국대표단은 어선안전협약의 의정서 초안작성과 관련하여 일본대표와 수차례 접촉하여 상호 의견교환 및 회의시 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아국제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6. 종합의견

아국이 1977 어선안전협약에 대한 기술적인 제반문제점 및 아국입장을 지난 해사안전위원회에 상세히 검토 제출함으로써 초안그룹에서 아국 제출문서를 기준으로 토의되었고, 회의의 주도하게 되어 상당부분 아국제안이 반영되었다.

또한 아국이 어선선박량이 3 위국이며 조선수주 1 위국이고, 금번 한국선급이 국제선급연합

회 정회원 가입 등으로 해사부분의 국제적인 활동이 증진되고, 올림픽개최 및 경제발전 등 국제적인 지위향상으로 아국의 발언에 대하여 각국이 주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결정된 어선

안전협약의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수락에 대비하여 사전에 국내법 반영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다른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소위원회 회의시 참가하여 아국제안을 반영토록 노력하여

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전문적 기술인력 및 예산의 확보로 IMO기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 일 굴 나 라 일 굴

나 라 손 님 내 손 님